

광주지방법원 2018. 6. 28 선고 2017나62739(본소), 2017 나62753 판결 [구상금 (반소)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광주지방법원 2018. 6. 28 선고 2017나62739(본소), 2017 나62753 판결

광주지방법원 2017. 10. 18 선고 2017가단508517(본소)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(변경 전: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)

변론 종결 2018. 6. 7

판결선 고 2018. 6. 28

제1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. 10. 18. 선고 2017가단508517(본소), 2017가단513571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피고(반소원고, 이하 ' 피고' 라 한다) 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 원고' 라 한다) 에게60, 000,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. 9. 28. 부터 이 사건소장부분송달일까지는 연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반소원고는 피고에게 20, 000,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. 10. 8. 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남해 광판사 정영민판사 조상은